

직원 채용 응시기준

I. 책임급(연구직) 채용분야 응시기준

* 책임급 자격 미충족시 탈락 조치

<인사규정>

직종 직급	연구직
29호 이상	1.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2.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0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채된 논문 10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3.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15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4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 4호의 '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'의 경우
 직원호봉부여지침 경력환산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자

<직원호봉부여지침 경력환산기준표 : 인사규정 4호 자격>

구분	해당 내용
일반경력	1. 4급 이상 공무원 2. 정부투자기관 등 국공영기업체의 부장급 6년이상 직원 3. 4년제 대학 부교수로 3년 이상 4. 일반법인 또는 단체에서 2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그 중 6년 이상 부장급으로 근무한 경력
연구기관	1. 법령에 의거 설치된 연구기관 및 외국 연구기관의 책임급 상당직원으로 동종업무 근무경력 2. 1호 이외의 연구기관(민간 업체의 연구소 등을 포함)에서 2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서 책임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
군경력	1. 대령 5년이상 근무경력

* (예시) 책임급 채용 가능자

-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
-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
- 법령에 의거 설치된 연구기관 책임급 상당직원으로 동종업무 근무경력자
- 대령 5년 이상 근무 경력자

Ⅱ. 선임급(연구직) 채용분야 응시기준

- * 각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참조
- * 선임급 채용분야는 호봉부여의 상한 개념 (최대 28호봉 부여)
- * 선임급 자격 미충족시 탈락 조치가 아닌, 원급 호봉(최대 11호) 부여

<인사규정>

직종 직급	연구 직
12호 이상	1.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획득한 자 2. 석사학위를 받고 4년 이상 해당 전공 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연구지에 발표한 자 3.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7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연구지에 발표한 자 4.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- * 4호의 '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'의 경우
 직원호봉부여지침 경력환산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자

<직원호봉부여지침 경력환산기준표 : 인사규정 4호 자격>

구분	해당 내용
일반 경력	1.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 2. 정부투자기관 등 국공영기업체의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3.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4. 일반 법인 또는 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그 중 3년 이상 과장급으로 근무한 경력
연구 기관	1. 법령에 의거 설치된 연구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의 선임급 상당 직원으로 동종업무 근무경력 2. 1호 이외의 연구기관(민간 업체의 연구소 등을 포함)에서 8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선임급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
군경력	1. 대졸 군 소령 1년 이상 근무경력 2. 초대졸 군소령 4년 이상 근무 경력 3. 고졸 군소령 7년 이상 근무 경력

- * (예시) 선임급 호봉부여 가능자
 -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획득한 자
 -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자
 - 법령에 의거 설치된 연구기관 선임급 상당직원 경력자
 - 대졸 소령 1년 이상 근무 경력자

Ⅲ. 원급(연구직/관리직), 기술직, 사무직 채용분야 응시기준

* 각 채용 분야별 공고문 상 자격기준 참조

■ 논문실적 인정 기준

구 분	주 요 내 용
인정 대상 논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학술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▪ SCI 또는 SSCI잡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▪ 기타 관련 위원회에서 상기 각 호와 동등한 학회지 또는 잡지라고 인정하는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
공동저자 논문의 편수 산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공동저자인 경우 논문 1/N 편으로 인정* N : 공동저자 수
논문발표 시점기준 인정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호봉부여 기준은 학위 취득 이후에 발표한 논문만 인정